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AU658)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3월 26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4월 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KOSPI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4년 월 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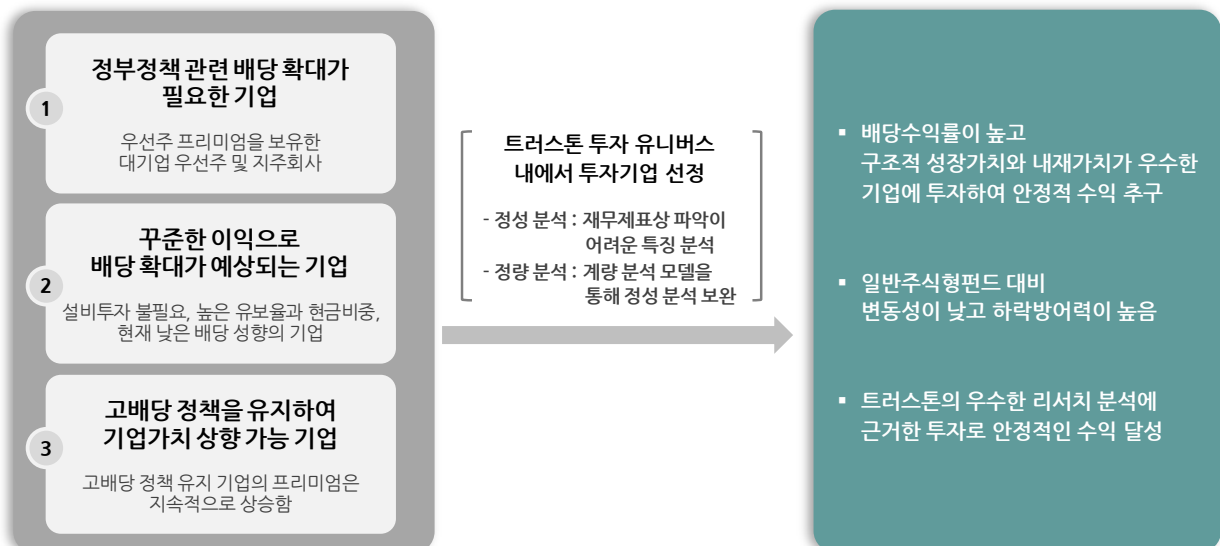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고배당 지속 가능기업, 배당성향 증가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트러스톤장기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 배당의 증가로 기업가치 상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
-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 지속 가능 기업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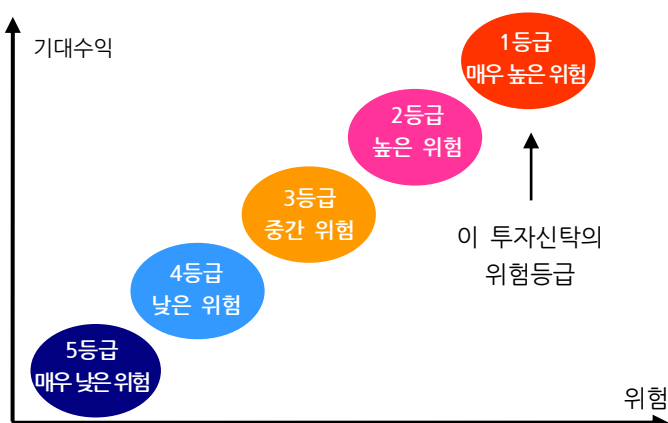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 100%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체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투자기구(주식형)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단위 : 억원, 개 / 기준일 : 2015. 2. 28.)

성명	출생 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송근용	1980년	책임 운용역 (과장)	7	2,956	학력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경력 08.09~10.09 웅진루카스투자자문 주식운용 10.09~12.01 토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 12.01~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CFA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주식운용 3 본부 SME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A	Ae	C1	C2	C3	C4	Ce	I	W
펀드코드	AU659	AU660	AU661	AU662	AU663	AU664	AU665	AU666	AU667
가입자격	가입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1 클래스 수익 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2 클래스 수익 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3 클래스 수익 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판매 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1.0% 이내	납입 금액의 0.5% 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A	Ae	C1	C2	C3	C4	Ce	I	W	
집합투자업자보수	0.720	0.720	0.720	0.720	0.720	0.720	0.720	0.720	0.72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00	0.350	1.300	1.100	0.900	0.700	0.500	0.030	0.000	
신탁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기타비용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사유 발생시
총 보수 비용(TER)	1.467	1.117	2.067	1.867	1.667	1.467	1.267	0.797	0.767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1.467	1.117	2.067	1.867	1.667	1.467	1.267	0.797	0.767	
증권거래비용	0.783	0.783	0.783	0.783	0.783	0.783	0.783	0.783	0.783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2	573	917	1,8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52	573	917	1,886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7	414	680	1,4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67	414	680	1,440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7	604	947	1,91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17	604	947	1,913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3	414	716	1,57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3	414	716	1,573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4	262	455	1,0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4	262	455	1,012
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1	252	438	9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1	252	438	976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 환매대금 지급
	기준가 적용	기준가 적용

IV. 요약 재무재표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